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당행에서는 은행업감독규정 제 25 조의 4(금리인하 요구 등) 제 3 항에 의거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,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금리인하요구권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(기업용) 제 20 조 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에 의거,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기업의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가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대상 여신

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

금리인하요구 사유

- 회사채의 등급이 상향된 경우
- 재무제표상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- 회사가 새로운 특허를 취득한 경우
- 담보를 제공함으로써, 신용 등급이 개선 된 경우
- 기타 사유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등



BNP PARIBAS

The bank
for a changing
world

신청방법

신용상태 개선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리담당자 (Relationship Manager)에게 문의해 주시거나 "금리인하요구" 문구를 포함한 제목을 작성하셔서 'kr_clm_csd@bnpparibas.com'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
기타
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**10 영업일** 이내 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
- 본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은 **2019년 6월 12일** 기준입니다.



BNP PARIBAS

The bank
for a changing
world